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절차 안내

-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절차 개요
 - 소상공인단체 신청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6개월 소요)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 소요) 지정·고시
- □ 신청대상 업종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예정) 업종 + 보호 시급 업종*
 -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의해 합의·도출 신청 후 합의도출 前 업종으로서 대기업 신규·확대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① (지정 신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시행령 별지2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붙임 서류 안내
 - ①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②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 ③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④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 경우에만 제출)
 -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여부는 신청단체 회원사의 '소상공인 확인서'로 증빙 가능 ('소상공인 확인서'가 아닌 '소기업 확인서'는 불인정)
 -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회원 가입 → 증빙자료 제출 → 확인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② (추천 요청)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붙임 서류 안내
 - ①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② 추천 요청 사유서, ③ 기타 필요자료
- □ 기타 안내사항
 -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지원실(☎ 02-368-8433, 8445)
 -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 지원과(☎ 042-481-4394, 8969)

<참고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시행령 별지2호 서식) 작성례

[예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정 추천일 부터 3개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구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업종 만료 업종・품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업종 신청 중인 업종・품목(「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 []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업종・품목(「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3호)					
 생계형	업종·품목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적합업종	동반성장업	12345				
신청	합의(지정)기간 만료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업종 • 품목	[독목 2019.5.30 법률」에 따른 적합업종 신청					
	단체명 한국생계형적합업종연합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단체	홍길동	111-11-1111				
	주소 (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0-00번 빌딩 101호					
	실무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전화)				
	김만세	02-111-1111 (010-1111-1111)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abc@abc.co.kr	02-111-111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3월 1일

신청단체

한국생계형적합업종연합회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	
	명하는 자료 1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2>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시행령 별지1호 서식) 작성례

[예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7	처리기간	6개월
추천 요청 업종ㆍ품목명		동반성장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12345			
신청단체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소	적합업종연합회 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0-00번 co.kr	111- 빌딩 1 전화번: 02-11 팩스번:	호(휴대전화) 1-1111 (0	1 10–1111–1111)
추천 요청 이유	에) 동 업종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으로 아주 영세하여 대기업등 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해 줄 것 을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 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합니다.

2019년 3월 1일

신청단체

한국생계형적합업종연합회 (서명 또는 인)

동반성장위원회 귀중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			
붙임 서류	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			
	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			
	음을 소명하는 자료 1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			
	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